

제 3회 이사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2월 4일(금) 오후 2시부터 본 협회 대 회의 실에서 제3회 이사회를 개최,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사항 의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건축사법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
 - 건설부의 건축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을 '94.2.7(월)까지 건설부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회장서신을 전국 회원에게 보내기로 협의함.
- 제2호 : 건축사업부 관련법령 분석에 대한 협의
 - 건축사업부 관련법령 연구에 따른 중간결과에 대한

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기로 협의함.
○제3호 : 설계·공사감리업무 지침 및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협의

- 설계·공사감리 업무지침 및 표준계약서 작성용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원의 회신이 접수되는대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협의함.

○제4호 : 감리지도반 운영지침(안)에 대한 협의

- 공사감리업무 운영지침(안)에 대한 시·도건축사회 의견을 취합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재 협의하기로 함.

○제5호 : 시·도건축사회 총회 개최에 따른 준비사항 협의

제 4회 이사회 개최



이사회 개최 광경

지난 2월 14일(월) 오후 2시

본 협회 제4회 이사회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공사감리업무 지도반 운영지침(안) 승인의 건 등 부의사항 의결과 건축사법 개정 건의(안)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호의 안 : 공사감리 업무 지도반 운영지침(안)승인의

건

-각 건축사회별로 회원의 의견 수렴후 별도 운영세칙을 마련, 4월 1일부터 자율 시행키로 협의함.

○제2호의 안 : 직원 보수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95년 예산편성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협의함.

공사감리업무 지도반 운영지침 마련

본 협회는 지난 2월 14일(월) 공사감리업무 지도반 운영지침(안)을 확정, 각 시·도건축사회별로 별도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토록하여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공사감리업무 지도반 운영 지침은 지난해 말 건설부로부터 공사감리 업무 지침이 시달될 때 따라 본 협회의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축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공사감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법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지도, 점검함을 목적으로 하고, 대상건축물, 점검시기, 벌칙사항 등 전13조로 구성,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건축물 : 단독, 다세대주

택(다가구 포함), 2층 이하 1,000m²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점검시기 : 1차 점검-기초구조물 설치완료 후(대지경계 측량여부 및 건물배치에 관한 사항)

2차 점검-지붕슬라브 공사 완료후(건물 바닥면적 증감여부, 평면변경, 일조권 침해 등)

○벌칙사항 : 당해 건축사회 회장은 각 시·도건축사회 윤리 위원회에 회비, 징계요구 가능

○기타 : 지도반원은 현장점검 결과 내용을 점검조사서에 기재날인 후 소속 건축사회 회장 및 당해 공사감리자에게 통보

『건축행정쇄신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본 협회는 지난해 연말 한양대 산업과학연구소에 의뢰, 건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사 300명, 건축관련 공무원 200명, 건축주 250명, 건설업자 100명, 주택사업자 100명, 건축관련 교수는 50명 등 총 1천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는 불법 건축과 부실시공의 해결책, 건축 인·허가제도(응답자 중 47.3%)와 공사감리제도(응답자 중 31.2%)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행정 및 법규

-인·허가제도 : 절차 및 제출 서류의 간소화와 관계공무원의 중원 및 전문성 확보등의 검토 필요

-공사감리제도 : 전문감리제도

의 확대 및 감리자의 질적향상 도모, 주요 공정마다 현장 방문 감리 실시 필요

-건축법령의 모호성과 건축법 규에 관한 공무원의 소신부족 지적

○건축물의 부실 및 위법건축

-주된 원인 : 건축주의 이윤추구, 관계기관의 단속과 시정조치 소홀

-대책 : 건축관계자의 의식개혁, 소규모 건축물 시공자의 자격부여 등

○건축부조리

-원인 : 건축주의 이윤추구에 따른 무리한 요구와 건축행정상의 인·허가에 대한 편의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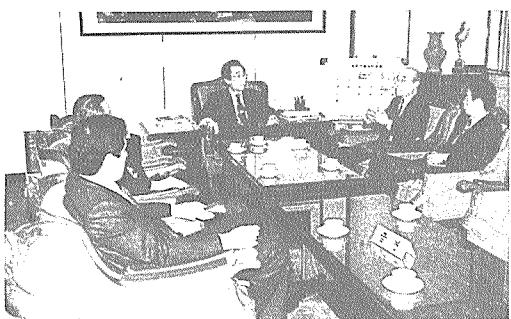
-과정 : 허가과정, 준공검사 과정

-대책 : 건축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관계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

재미 건축가 김진현 회장 내방

재미 시카고 한인 건축가협회 김진현 회장이 지난 2월16일 본 협회를 방문했다. 오웅석 회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김회장은 미국건축가협회 각종 규정집을

선물로 증정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특히 우리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과 건축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오웅석회장과의 환담 광경

건축물 각종 신고서류 대폭 폐지

건설부는 지난 1월 27일(목) 건축허가를 비롯해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 건축물 착공신고 등에 관한 각종 서류를 일제 정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부의 건축행정쇄신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각종 서류가 폐지 또는 통합되므로서 건축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각종 허가 및 신고시에 폐지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

–건축주의 주민등록번호, 장비 및 부하계산서, 전기설비 계산서

–건축허가시 일괄 처리되는 가

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

–건축허가시 일괄 처리되는 공작물 축조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

–건축계획 사전결정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허가시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용도변경

–복합건물의 용도변경동의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 이외는 징구 금지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해야 하는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도서』와 중복되는 『소방설비도』추가 징구 금지

○소규모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신고

–건축물 단면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첨부서류 일체, 공작물 축조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 이는 도면의 내용을 검토하여 확인한다.

○공작물 축조신고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입면도, 단면도

○건축물 착공신고

–사토 및 잔재처리 계획서,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 선정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사본, 지방세납세 완납증명서, 법인세 인감증명, 사용인 감계, 법인등기부등본, 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각종 근로소득세 완납증명,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등 건설업 면허대여 방지를 위한 서류를 건설업 면허증 수첩사본 활용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물 대장

–건축물 유지관리 조사보고업무는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 개정후 3개월까지 유예하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예토록 한다.

–건축물대상 덧붙임서류 감축을 철저히 이행한다.

○건축물대상 말소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시에는 동업무의 소관청과 건축물대장 관리청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말소신청 없이 관리청에서 직접 처리한다.

94년도 건축사 자격(면허)시험 시행 예고공고

1994.2.25

대한건축사협회장

시험 시행공고	원서 교부 및 접수	시험시행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기준	최종 합격자발표	비고
		1차	2차	1차	2차			
'94.6	'94.6	'94.7	'94.9	○시험과목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건축사 ○시험방법 : 객관식	○시험과목 –건축계획 –건축설계 ○시험방법 –건축계획 : 주·객관식혼용 –건축설계 : 실기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 과목 4할이상, 응 시과목총점의 평 균성적 6할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함	'94.11	기타 사항은 건축사법령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건설부(건축행정과)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자격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건설부(건축행정과) : 500-2861~2, 503-7357, 대한건축사협회(자격관리과) : 581-5711~4